G - 44 - 2011

수공구 사용 안전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대구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우 종 권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- 제·개정 경과
- 2010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1년 12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SAFETY TECHNICIAN'S HANDBOOK
- KS B 기계, 공구
- ANSI-B173.1990, 수공구의 안전요건
- Hand and Power Tools(OSHA 3080), 수공구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(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 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44 - 2011

수공구 사용 안전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(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)에 의거 작업도구 중 인력으로 조작하는 수공구 사용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인력으로 조작하는 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드라이버(Driver)"라 함은 주로 작은 나사, 나사 못, 태평 나사 등을 죄고 푸는데 사용하는 수공구로 일반적으로 스크루 드라이버라고도 말한다.
 - (나) "펜치(Plier)"라 함은 주로 동선류 또는 철선류를 잡고 구부리거나 자르는데 사용 하는 수공구를 말한다.
 - (다) "스패너(Spanner)"라 함은 볼트, 너트 또는 나사의 조립 또는 분해에 사용하는 둥근형 또는 뾰족형 수공구를 말한다.
 - (라) "칼(Knife)"이라 함은 종이 등의 재료를 자르는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.
 - (마) "줄(Files)"이라 함은 주로 금속을 손 작업으로 다듬질할 때 쓰이는 수공구를 말하다.

G - 44 - 2011

- (바) "톱(Saw)"이라 함은 손작업에 사용하는 쇠톱날을 말한다.
- (사) "가위(Scissors)"라 함은 절단 및 재단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가위를 말한다.
- (아) "해머(Hammer)"라 함은 철공, 목공, 토공작업 등에 사용하는 손망치를 말한다.
- (자) "끌(Chisel)"이라 함은 주로 금속의 모양을 깎아 만들거나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수공구로 철공작업용, 목공작업용 등을 말한다.
- (차) "펀치(Punches)"라 함은 여러 모양의 구멍류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끝이 날카롭거나 일정한 형상을 가진 수공구를 말한다.
- (카) "렌치(Wrench)"라 함은 볼트·너트 또는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입의 벌림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멍키 렌치 및 파이프에 사용되는 파이프렌치 등을 말 한다.
- (타) "플라이어(Pliers)"라 함은 물건의 크기에 따라 물림부의 벌림을 바꿀 수 있고 물림부의 안쪽에서 선재를 자를 수 있는 날 부위를 가졌거나, 구부림, 고정, 기타 작업에 사용하는 수공구를 말한다.
- (파) "클램프(Clamp)"라 함은 가공물을 단단하게 한 자리에 일시 고정시키고 목공작업, 용접작업, 금속작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수공구로 통상 바이스에 비해 가볍고 사용이 간편한 것을 말한다.
- (하) "바이스(Vices)"라 함은 작업대에 부착하여, 주로 손다듬질 또는 조립 작업을 할때, 가공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공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위험요인

G - 44 - 2011

4.1 일반적 위험요인

- (1)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해머 사용 중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, 추락
- (2) 해머 등 타격공구 손잡이가 헐겁거나, 금이 가고 쪼개져서 사용 중 해머머리 비래
- (3) 끌을 드라이버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공구 설계기준을 벗어난 본래 용도 외 사용
- (4) 가공물, 파편의 비래 또는 제품 결속용 밴드(Band) 해체 시 튕김
- (5) 작업장 내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로 등에 방치된 수공구에 걸려 전도되거나 상부에서 떨어진 수공구에 신체일부 맞음

4.2 수공구별 위험요인

4.2.1 드라이버

- (1) 드라이버 끝의 마모, 떨어짐, 구부러짐, 무딤, 손잡이의 파손, 이가 빠짐 등
- (2) 끌이나 펀치대신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한손으로 물품을 들고 드라이버를 조작하거나 부적당한 치수의 드라이버를 사용함

4.2.2 펜치

- (1) 물림면의 무딤 또는 손잡이의 마모
- (2) 물림면이 가공물에 맞지 않은 부적당한 형상 및 용도 외 사용

4.2.3 스패너

- (1) 턱의 파손, 마모, 기계적인 결함 또는 손잡이 파손
- (2) 부적당한 형상 및 치수의 펜치 사용, 파이프를 손잡이에 집어넣어 사용 또는 해머 대용으로 사용

4.2.4 칼

G - 44 - 2011

- (1) 날의 무딤 또는 마모된 손잡이
- (2) 위험장소에 두거나 칼집을 사용하지 않음

4.2.5 줄

- (1) 손잡이가 없고, 줄의 면이 타 물질로 메꾸어지거나 둔함.
- (2) 펀치대신으로 사용 또는 해머를 가지고 줄을 두드림

4.2.5 톱

- (1) 톱의 날이 무디고 손잡이가 빠짐
- (2) 톱날의 가로와 세로를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톱질할 때에 날 길이의 일부를 사용 4.2.6 가위
 - (1) 절단을 위해 손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발 등을 사용
 - (2) 사용 중인 가위에 비해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금속을 절단

4.2.7 해머

- (1) 손잡이가 헐겁거나 빠져있으며 머리 부분이 꼭 끼어 있지 않음
- (2) 잘못된 형태의 해머를 사용, 한손을 타격되는 바로 밑에다 놓음

4.2.8 끌과 펀치

- (1) 머리 부분이 떨어지고 끝이 지나치게 짧아서 잡기 어려움
- (2) 공구를 사용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하지 않음

4.2.9 렌치

(1) 조정나사의 망가짐, 조이는 부분의 이가 마모 또는 빠짐

G - 44 - 2011

(2) 부적당한 형상 또는 치수의 렌치를 사용, 파이프를 손잡이에 집어넣어 사용

4.2.10 플라이어

- (1) 플라이어를 해머 등 다른 용도로 사용
- (2) 경화된 철사를 자르거나, 단단한 철사를 구부림

4.2.11 클램프

- (1) 클램프를 조이는데 전용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펜치, 파이프, 망치, 플라이어 등을 사용
- (2) 클램프를 가공물을 고정시키는 임시고정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장기 고정용으로 사용

4.2.12 바이스

- (1) 손의 힘을 초과하여 조이기 위해 해머 등으로 손잡이를 두드림
- (2) 용접이나 납땜 등으로 바이스 수리

5. 공구 사용 전 조치사항

- (1) 작업의 형태, 대상물의 특성, 작업자의 체력 등을 고려하여 공구의 종류와 크기를 선택한다.
- (2)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반복훈련을 실시한다.
- (3) 가공물, 파편의 비래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에는 방호판을 설치하고 보안경, 안면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.

G - 44 - 2011

- (4) 고소지역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.
- (5) 손잡이 체결상태 및 수공구의 마모, 변형상태를 점검한다.
- (6) 손잡이의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.

6. 공구별 안전대책

- 6.1 조립공구(렌치, 드라이버, 플라이어 등)
 - (1) 렌치 등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확히 입의 물림면을 조인 후 사용하고 렌치 홈에 쐐기를 삽입하지 않도록 한다.
 - (2) 렌치, 플라이어 등은 큰 힘을 얻기 위해 파이프 등을 끼워 길이를 연장하거나 해머 등 다른 공구로 두드리지 않도록 한다.
 - (3) 손가락이 협착되지 않도록 손잡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공구를 선택한다.
 - (4) 렌치, 플라이어 등은 밀지 말고 끌어당기는 상태로 작업한다.
 - (5) 너트와 볼트작업에는 플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렌치를 사용한다.
 - (6) 플라이어 등은 과중한 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.
 - (7) 플라이어 등은 규칙적으로 중심점에 기름을 바른 후 사용한다.
 - (8) 드라이버 홈의 폭과 길이가 같은 날 끝의 것을 사용한다.
 - (9) 드라이버 날 끝이 수평하여야 하며, 둥글거나 빠진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 - (10) 드라이버 손잡이에 대하여 축이 수직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날 끝이 홈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교정하지 않는다.
 - (11) 드라이버로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손잡이로 된 드라이버를 사용한다.

G - 44 - 2011

- (12) 손이 잘 닿지 않거나 불편한 곳에서 나사를 돌리기 시작 할 때에는 나사가 자석 에 붙는 드라이버를 사용한다.
- (13)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다른 손으로 나사를 잡지 않도록 한다.

6.2 절단공구(칼, 톱, 가위, 끌 등)

- (1) 수직방향으로 절단하고 가공물이 튀지 않도록 절단부 주위를 마대자루, 천 등으로 방호한다.
- (2) 제품 결속용 밴드(Band)해체 시 충돌되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거리 유지 및 외부 인 접근 통제조치를 취한다.
- (3) 절단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 앞쪽으로 절단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톱은 잘리는 나무에 못, 옹이 또는 톱을 손상시키거나 휘어지게 하는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.
- (5) 톱날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베기 시작하고, 톱을 아래로 내릴 때만 압력을 가한다.
- (6) 가위는 연한 금속을 자를 때만 사용하고 단단하거나 경화된 금속은 다른 절단공구를 적절히 사용한다.
- (7) 오른손잡이가 가위를 사용할 경우 부스러기 등은 오른쪽에 놓이도록 절단하고, 왼손잡이의 경우는 부스러기 등이 왼쪽으로 놓이도록 절단한다.
- (8) 가위의 너트와 중심 볼트가 항상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, 중심볼트는 수시로 기름을 바른다.
- (9) 끌은 내리치는 면이 더 큰 나무나 플라스틱 해머 등을 사용한다.
- (10) 끌 사용시 나무에 마디, 꺽쇠, 나사, 못 등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 작업 전 확인한

G - 44 - 2011

다.

- (11) 열처리된 끌 등은 교정하기 위해 동력연삭기를 사용하지 말고 숫돌을 사용한다.
- (12) 강철 끌의 표면이 버섯 모양으로 퍼지거나 모서리 이가 빠진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6.3 타격공구(해머 등)

- (1) 추락 위험개소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다.
- (2) 2인 공동 작업시 가공물 지지자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집게나 고정구를 이용한다.
- (3) 사용시 헛치지 않도록 대상물의 표면보다 더 큰 직경의 해머머리를 선택한다.
- (4) 대형 해머의 경우 작업 전 신체를 충분히 이완시키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편평한 바닥위에서 안정 된 자세로 작업한다.
- (5) 작업에 맞는 무게의 해머를 사용하고, 한 두번 가볍게 친 다음에 사용한다.
- (6) 미끄러짐 방지를 위하여 기름 묻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지 않도록 하고,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짐이 없는 장갑을 착용한다.
- (7) 협소한 장소, 발 딛는 장소가 나쁠 때, 작업이 끝나기 직전에 특히 유의하여 작업한다.
- (8) 눈이나 신체일부에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, 벽돌 등 단단한 물질을 타격하지 않도록 한다.
- (9) 금이 가고, 부러지고, 쪼개지고,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해머머리에 헐겁게 끼워진 불안 전한 손잡이는 폐기하고. 손잡이가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여 사용한다.
- (10) 타격하는 해머의 표면이 맞는 물체의 표면에 평행하도록 수직으로 내리치고 물체를 주시하여야 한다.

G - 44 - 2011

(11) 해머 머리가 패인부분이 있거나 금이 간 것, 이가 빠진 자리, 버섯모양으로 퍼진 상태, 또는 지나치게 마모된 해머 머리는 사용하지 말고 교체한다.

6.4. 고정공구(클램프, 바이스 등)

- (1) 가공물을 들어 올리거나 작업발판, 가설비계 조립용으로 사용은 금지시킨다.
- (2) 다른 공구,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가공물을 무리하게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.
- (3) 클램프 형태와 크기는 작업에 따른 고정방법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클램프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한다.
 - (가) 강도와 무게
 - (나) 조절의 용이성
 - (다) 표면 조임
 - (라) 사용하는 재료와 크기
- (4) 바이스는 작업대나 지지대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바이스 바닥의 모든 구멍에는 볼트를 채운다.
- (5) 가공물을 변형시키지 않고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바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바이스를 꼭 조이기 위해 손잡이를 길게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
7. 안전수칙

7.1 일 반

- (1) 사업주는 안전한 상태의 수공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수공구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가공물의 비래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접 작업자가

G - 44 - 2011

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칼이나 가위의 날은 작업에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 한다. 날 부분이 둔탁한 칼 등은 더 위험하다.

- (3) 수공구 사용자는 보안경, 장갑, 안면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.
- (4)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스파크를 발생할 수 있는 철 등으로 된 타격공구를 사용하면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황동, 플라스틱, 알루미늄 또는 나무로 된 수공구를 사용한다.

7.2 안전수칙

- (1) 작업에 적정한 수공구를 사용한다.
- (2) 사용하기 적정한 상태를 유지한다.
- (3) 안전장소에 보관한다.
- (4) 수공구를 던지지 않는다.
- (5) 손상된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는다
- (6) 사용하기 전에 수공구 상태를 점검한다.
- (7) 수공구를 손에 들고 사다리 등을 오르지 않는다.
- (8) 작업을 할 때 손이 수공구를 잡고 있지 않도록 한다.
- (9) 수공구는 설계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(10) 사용할 수 없는 수공구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수리될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.
- (11) 수공구는 높은 곳에서 다른 작업자에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(12) 수공구의 유지·관리에 대해서는 각 작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, 부적절한 수공구 발견 시 즉시 수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.

G - 44 - 2011

- (13) 칼 등 날카로운 수공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
- (14) 사용 후 적절한 보관함 등을 활용하여 제자리에 보관한다.
- (15) 작업복 호주머니에 날카로운 수공구를 넣고 다니지 않는다.
- (16) 모든 수공구는 기록·관리 하고, 항상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